

## 2018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2018년 10월 13일



##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 1. 출제영역분석

|              |   |              |   |
|--------------|---|--------------|---|
| 지방자치의 기초적 이해 | 1 | 지방자치와 주민의 참여 | 5 |
| 지방자치의 기본적 체계 | 6 | 지방자치의 재정     | 1 |
| 지방자치의 운영     | 4 | 정부 간 관계      | 3 |

## 2. 출제경향분석

|       |    |         |   |        |   |
|-------|----|---------|---|--------|---|
| 기출 문제 | 15 | 기출변형 문제 | 3 | 신유형 문제 | 2 |
|-------|----|---------|---|--------|---|

## 3. 출제문제유형분석

| 말 바꾸기 | 짝찾기 | 내용 분류 | 개념 | 순서 연결 | 제도 및 이론비교 | 법령 문제 |
|-------|-----|-------|----|-------|-----------|-------|
| 1     | -   | 4     | 3  | -     | 3         | 9     |

- ㄱ. 지역 단위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고용하기 쉽기 때문에 행정 전문성을 제고하기에 유리하다.  
 ㄴ. 자치사무에 대한 자율결정 및 집행권으로 인해 지역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ㄷ. 규모의 경제 확보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 향상에 유리하다.  
 ㄹ.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 【해설】 ㄱ [X] 지방자치의 경우 중앙집권체제에 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전문성, 낮은 기술 등으로 인해 낭비와 비능률이 발생할 수 있다.  
 ㄴ [O] 지방자치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집행이 가능하고, 지역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ㄷ [X] 지방자치단체는 규모 경제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며, 지방자치는 문제를 해당 지역의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집중한 나머지,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전국적 차원에서의 효과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ㄹ [O] 지방자치에서 공동체의 결속력이 지역개발 시 지역의 특수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잘못 분출된 경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 ㄱ. 지역 단위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행정 전문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  
 ㄷ. 규모 경제의 낭비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

summary | 지방자치의 효용성과 폐해

| 구 분 | 효용성                                                            | 폐 해                                          |
|-----|----------------------------------------------------------------|----------------------------------------------|
| 정 치 | ①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br>② 민주주의의 훈련장<br>③ 전제정치의 방파제<br>④ 정국마비의 방지(안정성) | ① 부분집착과 전체소홀<br>② 위기대응 능력의 저하                |
| 행 정 | ① 지역실정 적응행정<br>② 정책의 지역적 실험<br>③ 분업을 통한 효율행정<br>④ 지역 안의 종합행정   | ① 낭비와 비능률<br>② 외부효과와 사업기피                    |
| 경 제 | ① 자원배분의 효율성<br>② 소비자 선호성의 구현<br>③ 주민후생의 극대화<br>④ 지역 특수산업의 발전   | ① 규모경제의 낭비<br>② 지자체별 독자적 분배나 경제안정 화시책의 실패가능성 |
| 사 회 | ① 경쟁성과 창의성의 제고<br>② 주체의식, 책임의식<br>③ 다원적 사회의 형성                 | ① 지역주의와 배타성<br>②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기능마비             |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9~11

▶ ③

## 02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의 주민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청구할 수 있다.
- ②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의 부과 ·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청구할 수 없다.
- ③ 공공기관 및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 · 개정안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① [O]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② [O], ③ [X]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의 부과 ·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④ [O] 동법 제15조 제3항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 · 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올바른 지문

- ③ 공공기관 및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청구할 수 없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137, 138 / 부속법령집 p.18

▶ ③

### 03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부처의 할거성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지방의 종합 행정으로 전환되는 장점이 있다.
- ②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중복으로 인해 비효율성과 행정력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아 책임행정이 결여될 수 있다.
- ④ 현장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순기능이 있다.

- 【해설】 ① [X] 중앙통제의 관리감독의 편리성과 중앙부처의 할거성(할거주의)으로 인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난립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러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의 종합 행정을 저해하며 행정의 할거성을 심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 ② [O]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중복, 이중 감독 등으로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 ③ [O]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 및 통제력을 약화시킨다.
- ④ [O]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한 지방공공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현장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 ▶ 올바른 지문

- ① 중앙부처의 할거성으로 인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지방의 종합행정을 저해시키는 단점이 있다.

#### summary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필요성과 문제점

|     |                                                                                                                                                            |
|-----|------------------------------------------------------------------------------------------------------------------------------------------------------------|
| 필요성 | ① 양적 팽창과 질적 전문화로 복잡화된 행정을 보다 효율적·광역적으로 수행함.<br>②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는 사무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문제점 | ① 중앙통제의 강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br>② 지방행정의 종합성 상실, 행정의 할거성이 강화됨.<br>③ 지방행정기관의 이원화로 고객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br>④ 지방행정의 민주성 상실을 초래<br>⑤ 지방자치단체와 마찰 증대(이중행정, 이중감독의 문제)의 우려가 있음. |

## 04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 ②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③ 지방공기업의 손실 보전
- ④ 지방채의 차환

【해설】 ①, ②, ④ [O] 「지방재정법」 제11조 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X] 「지방재정법」상 지방공기업의 손실 보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없다.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 ▶ 올바른 지문

- ③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185 / 부속법령집 p.78

▶ ③

## 05 중층의 지방정부 계층구조의 단점이 아닌 것은?

- ① 기초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시 조정의 어려움
- ② 행정기능 중첩으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와 지연 발생 가능성
- ③ 물적 자원의 흐름에 있어서의 지연 가능성
- ④ 의사와 정보의 왜곡 가능성

【해설】 ① [X] 중층제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광역적 관할구역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두는 구조로,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갈등과 분쟁의 조정이 유리하다.  
 ② [O] 중층제를 선택할 경우 이중 행정, 이중 감독의 폐단으로 불필요한 낭비와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③ [O] 중층제는 물적 자원의 흐름에 있어서 지연이 발생 할 수 있는 등 업무수행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④ [O] 중층제는 정보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유하는 계층이 많을수록 의사의 누수와 정보의 왜곡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 ▶ 올바른 지문

- ① 기초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시 조정이 용이함.

## summary | 중층제의 장단점

|     |                                                                                                                                                                                                                                                                                                                  |
|-----|------------------------------------------------------------------------------------------------------------------------------------------------------------------------------------------------------------------------------------------------------------------------------------------------------------------|
| 장 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지방정부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사무를 담당·처리하고, 상급 지방정부는 광역사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공공기능의 분업적 수행을 가능케 함.</li> <li>기초지방정부에 대해 지역사정에 밝은 상급지방정부가 일차적 감독기관의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의 감독기능을 원활하게 함.</li> <li>상급지방정부가 국가의 강력한 간섭과 감독으로부터 기초지방정부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의 확산과 유지에 도움이 됨.</li> </ul>                       |
| 단 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지방정부와 상급지방정부 간 행정기능이 중첩됨으로써 이중행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와 지연이 발생 할 수 있음.</li> <li>기초지방정부와 상급지방정부 간 책임관계가 모호한 경우 행정책임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li> <li>주민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사전달과 중앙행정의 주민에 대한 침투가 중간지방정부에 의해 왜곡될 수 있음.</li> <li>기초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와 상급지방정부에 의한 이중감독과 이중규제가 행해질 가능성이 있음.</li> </ul> |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43



## | 법령문제 |

### 06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 ②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해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④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써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해설】 ① [O] 지방자치법 제68조

**제68조 【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② [O]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

**제66조 【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③ [X] 과반수가 아닌 3분의 1이상이다.

**제63조 【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O]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

**제65조 【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올바른 지문

- ③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98 / 부속법령집 p.55



## 07 수원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 ① 농산물 · 임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
- ② 국가하천 · 국유림 · 일반국도 · 국토종합개발계획 사무
- ③ 수원시의 지방공사 설립 · 운영
- ④ 수원시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 승인 · 결정

【해설】 ①, ② [X] 보기의 내용은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는 처리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1조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3. 농산물 · 임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 · 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③ [O] 「지방공기업법」상 수원시는 지방공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X] 수원시의 지방채 발행계획안의 승인 및 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78, 115, 186 / 부속법령집 p.13



## 08 최근 국정 운영은 물론 지방정부의 운영에서도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터스(Peters)와 피에르(Pierre)는 정부가 아닌 네트워크, 직접 통제가 아닌 영향력 행사, 공사협동, 대안적 정책방식의 활용 등을 요소로 하는 통치방식으로 거버넌스를 보았다.
- ② 거버넌스의 확대가 다양한 사회 세력들의 참여를 증대시킴으로써 정부의 전횡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 ③ 선출을 통해 구성되지 않은 외부기관에 의하여 민주적 정부가 통제받는다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에 위배되고 선거기제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곤란해질 수 있다.
- ④ 거버넌스의 등장배경에는 시장실패, 재정 위기의 심화, 사회적 복잡성의 증대, 통치 양식의 효율화 등 다양한 원인이 지적된다.

【해설】 ④ [X] 거버넌스는 시장실패가 아닌 정부의 실패와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위기 심화 등의 원인이 지적된다. 정부의 실패는 시장과 시민사회의 개입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됐고, 시장과 시민, 국가나 기타 사회의 다원적 영역이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새로운 정부관리의 패러다임이 요구된 것이다.

### ▶ 올바른 지문

④ 거버넌스의 등장배경에는 정부실패, 재정 위기의 심화, 사회적 복잡성의 증대, 통치 양식의 효율화 등 다양한 원인이 지적된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135



09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 ②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 부담심의위원회를 둔다.
- ③ 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해설】 ① [O] 지방재정법 제20조

**제20조 【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② [X]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이다.

**제27조의2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O] 지방재정법 제27조의 7

**제27조의7 【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O] 지방재정법 제21조 제2항

**제21조 【부담금과 교부금】**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 올바른 지문

②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둔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70 / 부속법령집 p.132

▶ ②

10

지방선거 정당참여의 찬성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책임정치의 구현
- ② 지방자치의 자율성 강화
- ③ 민주정치의 원리
- ④ 정당 배제의 현실적인 한계

【해설】 ①, ③ [O] 정당의 참여는 지방정부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높임으로써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민주정치의 원리를 실현하게 한다.

② [X] 정당의 참여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의 연장으로 만들면서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④ [O] 형식상 정당의 참여를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정당의 역할이 배제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 올바른 지문

② 정당참여의 배제론 - 지방자치의 자율성 약화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127

▶ ②

## 11 아른스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에서 실질적 참여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권한위임(delegated power)
- ② 정보제공(informing)
- ③ 조작(manipulation)
- ④ 상담(consultation)

【해설】 ②, ④ [X] 정보제공(informing)과 상담(consultation)은 아른스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의 유형 중 형식적 참여의 수준이다.

③ [X] 조작(manipulation)은 아른스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의 유형 중 비참여의 수준이다.

### summary | 주민참여의 유형(Arnstein)

| 조작  | 임시치료 | 정보제공   | 상담 | 회유 | 대등협력     | 권한위양 | 자주관리 |
|-----|------|--------|----|----|----------|------|------|
| 비참여 |      | 형식적 참여 |    |    | 주민권력적 참여 |      |      |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136



## 12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 |            |               |
|------------|---------------|
| ㄱ. 주민투표실시권 | ㄴ. 규칙제정권      |
| ㄷ. 재의요구권   | ㄹ. 청원의 수리와 처리 |
| ㅁ. 조례제정권   |               |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ㄴ, ㄷ, ㅁ
- ④ ㄷ, ㄹ, ㅁ

【해설】 ㄱ, ㄴ, ㄷ [O] 주민투표실시권, 규칙제정권,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해당한다.

ㄹ, ㅁ [X] 청원의 수리와 처리, 조례제정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이다.

### summary | 지방의회의 권한 vs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 지방의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① 조례 제정 및 개폐<br>② 예산의 의결 및 결산 승인<br>③ 중요정책의 심의·결정 : 사용료·수수료·분담금의 부과·징수·감면 등<br>④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항의 의결<br>⑤ 행정감시권(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요구,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감사)<br>⑥ 청원수리·처리권<br>⑦ 기관선출 및 자율운영권 | ① 자치단체의 대표 및 사무총괄권<br>② 사무의 관리·집행권<br>③ 소속행정청·관할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권<br>④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 및 지휘감독권<br>⑤ 지방의회에의 발안권<br>⑥ 규칙제정권<br>⑦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권(재의요구 및 제소)<br>⑧ 선결처분권<br>⑨ 임시회 소집요구권 |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92~98, 101~103 / 부속법령집 p.46,47, 65~67



### 13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 읍부즈만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실시된다.
- ② 주민소환제는 인적 대상에 대한 처리라는 점에서 일반적 안전에 관한 주민 결정제도인 주민투표제와는 구분된다.
- ③ 현행법상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④ 주민감사청구제는 사법적 방법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 【해설】 ① [O] 주민읍부즈만제도는 부천시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시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읍부즈만제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 ② [O]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소환하여 해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하여 직접 주민투표결로서 결정하는 제도이다.
- ③ [O] 현행법상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X] 주민감사청구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상급자치단체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행정적 방법이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139~145, 161

▶ ④

### 14 라이트(Wright)와 로즈(Rhodes)의 정부간 관계모형은 상하위 정부간 관계의 성격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두 학자의 모형 중 특성이 유사한 모형을 바르게 묶은 것은?

|                       |                                                                                                                        |
|-----------------------|------------------------------------------------------------------------------------------------------------------------|
| 라이트<br>(Wright)<br>모형 | ㄱ. 분리권위모형(separated authority model)<br>ㄴ. 내포권위모형(inclusive authority model)<br>ㄷ. 중첩권위모형(overlapping authority model) |
| 로즈<br>(Rhodes)<br>모형  | A. 상호의존모형(interdependent model)<br>B. 대리인모형(agent model)<br>C. 동반자모형(partnership model)                                |

- ① ㄱ-A, ㄴ-B, ㄷ-C
- ② ㄱ-B, ㄴ-A, ㄷ-C
- ③ ㄱ-C, ㄴ-A, ㄷ-B
- ④ ㄱ-C, ㄴ-B, ㄷ-A

【해설】 ④ [O] ㄱ - C, ㄴ - B, ㄷ - A

ㄱ - C : 분리권위모형(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 있는 경우로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적이고 국정 파트너로서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지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인식하는 동반자모형(C)과 유사하다.

ㄴ - B : 내포권위형(ㄴ)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직적 관계로 지방은 단순한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보는 대리인 모형(B)과 유사하다.

ㄷ - A : 중첩권위모형(ㄷ)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독자성을 유지하며 기능적으로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경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양자가 서로 의존하고 있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호작용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상호의존모형(A)과 유사하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199~201

▶ ④

| 법령 문제 + 말 바꾸기 |

15 「지방자치법」상 군(郡)과 면(面)의 명칭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면의 명칭 변경은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② 군의 명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
- ③ 군의 영문 및 한자 명칭 변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군의 명칭 변경의 경우 반드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① [O] 면의 명칭 변경의 경우 그 결과를 광역자치단체에게 보고하면 된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③ [X] 지방자치단체인 군의 명칭변경은 법률(대통령령 X)로 정하고 한자 명칭 변경은 대통령령(조례 X)로 정한다.

**동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X] 군의 명칭 변경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된다.

**동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올바른 지문

- ② 군의 명칭 변경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 ③ 군의 한자 명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군의 명칭 변경의 경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summary | 자치구역과 행정구역의 조정절차

| 구 분                             | 형 식  | 대 상 및 절 차                                             |
|---------------------------------|------|-------------------------------------------------------|
| 자치구역<br>(광역 & 기초<br>자치단체)       | 법 률  | 명칭변경, 구역변경, 폐지분합<br>(지방의회 의견청취 必要, 단,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 제외) |
|                                 | 대통령령 | 한자명칭변경, 경계변경                                          |
| 행정구역<br>(자치구가 아닌<br>구, 읍, 면, 동) | 조 례  | 폐지분합(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                                    |
|                                 |      | 명칭변경, 구역변경(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                              |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60, 61 / 부속법령집 p.6~8

▶ ①

| 내용 분류 + 법령 문제 |

## 16 제주특별법상 제주 자치경찰사무가 아닌 것은?

- ①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 ②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 ③ 안전사고와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 ④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해설】 ①, ②, ③ [O]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는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을 보호하는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 【사무】 자치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자치경찰사무"라 한다)를 처리한다.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 나.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 다. 안전사고와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 라.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와 가정·학교 폭력 등의 예방
  -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와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2.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가. 교통안전과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 나.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 다.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지도
3.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

④ [X]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사무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80

▶ ④

- ㄱ.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정무직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 ㄴ.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2명 또는 3명인 경우에 그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ㄷ.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ㄹ.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을 두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①  $\neg$ ,  $\vdash$   
②  $\neg$ ,  $\vdash$   
③  $\neg$ ,  $\vdash$   
④  $\vdash$ ,  $\vdash$

**[해설]** ㄱ [X]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일반직 지방공무원 X)으로 보한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O] 지방자치법 제110조

**동법 제110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⑥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부지사를 3명 두는 시·도에서는 그 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ㄷ [○] 지방자치법 제112조

**동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크 **[X]**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을 두는 경우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동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올바른 지문

- ㄷ.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을 두는 경우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103~105 / 부속법령집 p.67~70

► ②

## 18 지방정부 구역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통합옹호론과 통합반대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합반대론은 통합의 효과가 공공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② 통합옹호론은 분절된 구역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책임성 저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③ 통합반대론은 지방정부 간 경쟁이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효율성 증대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 ④ 통합옹호론은 통합이 구역 내 수평적 형평성 확보는 물론 시민과의 접근성도 용이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 【해설】 ① [O] 통합반대론은 자치단체를 통합하자는 것에 대해 통합의 효과는 공공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절화 된 구역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 ② [O] 통합옹호론은 자치단체의 통합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분절화 된 구역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오히려 경쟁이 과다하게 되고, 행정책임소재의 분산으로 책임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 ③ [O] 통합반대론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하는 것이 효율을 증대시킨다고 본다.
- ④ [X]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율성 확보 뿐만 아니라 구역 내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분절화 된 구역이 더 유리하다.

### ▶ 올바른 지문

- ④ 통합옹호론은 통합이 구역 내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통합반대론은 구역의 분절화가 시민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59

▶ ④

## 19 다음 중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광역행정)방식으로 사무의 위탁, 사무의 공동처리, 통합 · 합병 방식 등이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기구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심화, 규모의 경제 효과 확보 등의 문제는 광역행정이 필요한 이유다.
- ④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해설】 ④ [X]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주민 ×)이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자치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올바른 지문

- ④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218, 221~224, 227, 228 / 부속법령집 p.100, 104

▶ ④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1명 이상의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② 지방직영기업이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담당업무이다.
- ③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④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현금 흐름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해설】 ① [X]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두어야 하지만 1명 이상의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지방공기업법 제7조 【관리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질이 같거나 유사한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1명만 둘 수 있다.

② [X] 지방직영기업이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은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지방자치단체장 X)의 업무이다.

**동법 제9조 【관리자의 업무】** 제8조에 따라 관리자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2.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3. 결산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취득·관리·처분하는 사항
5.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
6. 요금이나 그 밖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
7.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8.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에 관한 사항
9. 증명서 및 공문서류를 보관하는 사항
10. 지방직영기업의 조직 및 인사(人事)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관리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O]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동법 제14조 【독립재산】**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X]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동법 제16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하 "회계거래"라 한다)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올바른 지문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② 지방직영기업이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의 담당업무이다.
- ④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114 / 부속법령집 p.95

▶ ③